

건축허가(신고)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

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(신고)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2월 17일

양 구 군



1. 사 업 명 : 건축허가(신고)에 따른 도로지정
2. 사업(대지위치) :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245-1 외 1필지
3. 도로위치 : 양구군 양구읍 월명리 248 (1필지)
4. 도로길이 : 26.8m
5. 도 로 폭 : 1.9m
6. 도로면적 : 51㎡
7.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

소 재 지	지 번	지 목	면 적				소 유 자	비 고
			공부면적 (㎡)	길이(m)	너비(m)	면적(㎡)		
양구군 양구읍 월명리	248	답	3,560	26.8	1.9	51	함*복	도로지정동의
	1필			26.8		51		